

사하구 폐기물감량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- 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1999. 10. 8. ----- 사하구청장
- 나. 회 부 일 자 : 1999. 10. 11.
- 다. 상 정 일 자 : 1999. 10. 16.(제78회사하구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산업위원회 상정)
2000.11. 2.(제87회사하구의회임시회 제3차사회도시위원회상정
원안의결)

2. 제안실명의 요지(환경청소과장 구용대)

가. 제안이유

- 폐기물의 발생억제를 위한 조치명령절차등이 자원의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법률 및 시행령에 규정됨에 따라 불필요한 조항을 삭제함으로써 업무의 편의를 도모하고
- 과태료부과기준은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 관한법률 제42조에 의거 환경부에규에 의하도록 되어 환경부에규가 개정될때마다 조례를 개정해야 하는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기 위함

나. 주요골자

- 폐기물등의 발생억제를 위한 조치명령은 자원의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에 규정되어 불필요한조항을 삭제
- 폐기물감량과 자원재활용의 효율적추진을 위한 일반수집업자 보고 및 관계

공무원의 검사는 자원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규정되어 불필요한조항을 삭제함

- 별표1의 과태료부과기준을 삭제하고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과태료부과기준에 따라 부과하도록 함
- 과태료부과징수절차등을 신설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요지

- 본조례 개정건은 폐기물의 발생억제를 위한 조치명령절차 및 폐기물간량과 자원의 재활용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상위법 및 시행령에 규정됨에 따라 조례상 불필요한 조항을 삭제함으로써 업무의 편의를 도모하며 과태료부과기준은 관련업소 및 주민들에게 직접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항이므로 사하구보나 홍보매체를 통한 주민홍보가 강화되어야 할 것이며
- 광역시 및 타구의 개정추이를 보아 결정하여야 할 것이며 과태료부과징수절차등은 현재 조례상 구청장에 따로 정하도록 되어있고 또한 조례상 신설규정을 두는것보다 조례를 시행하기위한 세부적인 사항이므로 시행규칙에 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사료됨

4. 결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5. 토론 요 지 : 생략

6. 심 사 결 과 : 원안의결